

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심사 보고서

1993년 5월 25일
총무 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5월 18일 남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3년 5월 18일 회부
- 다. 상정 일자 :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(1993년 5월 2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유용현)

가. 제안 이유

여름철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사장내 해초 및 쓰레기 수거에 신속성을 기하고 소요 인력의 절감을 위하여 경운기를 신규 취득으로 구입하고 취득세 부과 및 차량 등록 조회용으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.

나. 주요 골자

-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운기 구입
- 취득세 부과 및 차량 등록 조회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- 경운기 구입과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해 검토를 해 보면 경운기의 경우 광안리 해수욕장은 근래에 들어 그 주변이 상가로서의 기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사철의 구분과 밤, 낮의 개념이 없을 정도로 우리구 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에게 사랑과 아낌을 받고 있는 관광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여름철은 물론이거니와 사계절 내내 쓰레기 정리 및 넓은 모래사장의 정리 작업은 필요 불가한 사항이나 제한된 제반 사항으로서는 예산 및 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사장 관리를 위하여 '92.8.30 당시 광안리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 단체 협의회에서 기증한 경운기 1대로서는 부족하므로 추가 경운기 구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세무1과의 취득세 부과 및 차량등록 조치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가 되고 있어 능률적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「없 음」

5. 토론 요지 : 「없 음」

6. 심사 결과 : 「원안 가결」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 음」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 음」